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구위기 대응 전담 중앙행정기관 신설,
정무장관 신설〉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88호)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23호)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066호)
- 박성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98호)
- 추경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10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개 요	1
---------------	---

【김성원의원안】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백혜련의원안】

1. 제안경위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서삼석의원안】

1. 제안경위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

【박성민의원안】

1. 제안경위	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

【추경호의원안】

- 1. 제안경위 6
- 2. 제안이유 6
- 3. 주요내용 7

Ⅱ. 검토의견 8

- 1.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전담 중앙행정기관 신설(개정안 공통) 8
- 2. 국무총리 소속 정무장관 신설(추경호의원안) 36

I. 개 요

【김성원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성원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6. 12.

다. 회부연월일 : 2024. 6. 1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국가적 과제임.

그런데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고,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46조).

【백혜련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백혜련의원 등 2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6. 19.

다. 회부연월일 : 2024. 6. 2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임.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밀집, 경제활동인구·학령인구·군병력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 축소, 학교 기능 저하, 안보 위협 등을 야기하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문제 해결과 관련된 업무들이 다수의 부처에 산재해 있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실행이 어려운 상황임. 일례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아동돌봄서비스가 대동소이해 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뿐만 아니라 현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자문위원회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 결정 및 예산 편성 등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고, 파견직이 대다수인 현 사무처의 인력 구성 및 업무 체계로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

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한편 KDI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3년 저출생 대응 예산 47조원 중 절반 이상이 저출생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현재 저출생 대응 대책은 보건복지부가 세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각기 다른 부처의 사업을 저출생 대응 대책으로 선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되는 구조임. 그런데 이런 백화점식 정책 운영으로 인해 저출생과 무관한 사업이 관련 정책으로 선정되며 저출생 예산의 착시효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음.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도 인구위기 주무부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저출생 정책 계획 수립과 집행력 담보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 및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6항, 제26조제1항제3호부터 제19호, 제29조부터 제45조).

【서삼석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서삼석의원 등 15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6. 27.

다. 회부연월일 : 2024. 6. 2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2023년 합계출생률은 OECD 회원국 최저 수준인 0.7명 대였으며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 산하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출연시켰으나,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은 복지·교육·일자리·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서 분산하여 담당하고 있어 당면 과제를 통합적·체계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기획·종합 업무를 담당하는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를 신설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저출산·고령화 흐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신설 등).

【박성민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성민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7. 4.

다. 회부연월일 : 2024. 7. 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40.6만명이던 신생아 수가 2022년에는 24.9만명으로 대폭 감소하고,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 역시 1.17명에서 0.78명으로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현재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부처의 여러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인구문제를 전담하는 부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한편 여성가족부가 젠더갈등 해소와 권력형 성범죄 등에 대처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고,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성평등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총괄·

조정, 인구정책의 수립·총괄,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저출산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산대응기획부장관으로 하여금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신설 등).

【추경호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추경호의원 등 108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7. 11.

다. 회부연월일 : 2024. 7. 12.

2. 제안이유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국가 아젠다로서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며,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등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정무장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인구·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함(안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제5항 및 제23조 개정).
- 나.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위원인 정무장관을 신설함(안 제20조 신설).
- 다.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를 전담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함(안 제29조 신설).

II. 검토의견

1.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전담 중앙행정기관 신설(개정안 공통)

개정안들은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중앙행정기관(저출생대응기획부, 인구위기대응부,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 저출산대응기획부, 인구전략기획부)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9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9조, 제42조, 제46조).

현 행	김성원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서삼석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제12조(국무회의) ① (현 행 과 같음)		제12조(국무회의) ① (현 행 과 같음)	제12조(국무회의) ① (현 행 과 같음)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		② ----- ----- ----- ----- ----- ----- ----- ----- -----		② ----- ----- ----- ----- ----- ----- ----- ----- -----	② ----- ----- ----- ----- ----- ----- ----- ----- -----

현 행	김성원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서삼석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장이 모두 사고로 직 무를 수행 할 수 없 는 경우에 는 <u>기획재 정 부 장 관</u> <u>이</u> <u>겸임하</u> <u>는 부총리,</u> <u>교 육 부 장</u> <u>관이</u> <u>겸임</u> <u>하는 부총</u> <u>리</u> 및 제2 6조 제1항 에 규정된 순서에 따 라 국무위 원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 ----- ----- ----- ----- - <u>기획재 정 부 장 관</u> <u>이</u> <u>겸임하</u> <u>는 부총리,</u> <u>교 육 부 장</u> <u>관이</u> <u>겸임</u> <u>하는 부총</u> <u>리, 인구위</u> <u>기 대 응 부</u> <u>장관이</u> <u>겸</u> <u>임하는 부</u> <u>총리</u> ----- ----- ----- ----- ----- ③ . ④ (현 행 과 같음)		----- ----- ----- ----- ----- - <u>기획재 정 부 장 관</u> <u>이</u> <u>겸임하</u> <u>는 부총리,</u> <u>저 출 산 대</u> <u>응 기 획 부</u> <u>장관이</u> <u>겸</u> <u>임하는 부</u> <u>총리</u> ----- ----- ----- ----- ----- ③ . ④ (현 행 과 같음)	----- ----- ----- ----- ----- - <u>기획재 정 부 장 관</u> <u>이</u> <u>겸임하</u> <u>는 부총리,</u> <u>인 구 전 략</u> <u>기 획 부 장</u> <u>관이</u> <u>겸임</u> <u>하는 부총</u> <u>리</u> ----- ----- ----- ----- ----- ③ . ④ (현 행 과 같음)

현 행	김성원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서삼석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 령 령 으 로 정한다. 제19조(부총 리) ① 국 무 총 리 가 특별히 위 임하는 사 무를 수행 하기 위하 여 부총리 <u>2명</u>을 둔 다. ② 부총리 는 국무위 원으로 보 한다. ③ 부총리 는 <u>기획재 정 부 장 관 과 교육부 장관</u>이 각 각 겸임한 다. ④ 기획재 정 부 장 관 은 경제정 책에 관하 여 국무총		제19조(부총 리) ① -- ----- ----- ----- ----- ----- <u>3명</u>----- -. ② (현행 과 같음) ③ ----- -- <u>기획재 정 부 장 관, 교 육 부 장 관 및 인 구 위 기 대 응 부 장 관</u>- -----. ④ . ⑤ (현 행 과 같음)		제19조(부총 리)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 -- <u>기획재 정 부 장 관, 저 출 산 대 응 기 획 부 장 관</u>----- -----. ④ (현행 과 같음)	제19조(부총 리)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 -- <u>기획재 정 부 장 관, 인 구 전 략 기 획 부 장 관</u>----- ----. ④ (현행 과 같음)

현 행	김성원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서삼석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추경호의원안
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을 총괄·조정한다. ⑤ <u>교육부 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 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을 총괄·조정한다.</u> <u><신 설></u>				⑤ <u>저출산 대응 기획 부 장 관 은 사 회 · 교 육-----</u> ----- ----- ----- ----- ----- ----- -----.	⑤ <u>인구전략 기획 부 장 관 은 인 구 · 사 회-----</u> ----- ----- ----- ----- ----- ----- -----.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 대행)		⑥ <u>인구위기 대응 부 장 관 은 인 구 정 책 에 관하여 국무 총 리 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 행정 기 관 을 총괄·조정한다.</u>			제23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

현 행	김성원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서삼석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추경호의원안
국 무 총 리 가 사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기획 재 정 부 장 관이 겸임 하는 부총 리, <u>교육부</u> <u>장관이 겸</u> <u>임하는 부</u> <u>총리의 순</u> 으로 직무 를 대행하 고, 국무총 리와 부총 리가 모두 사고로 직 무를 수행 할 수 없 는 경우에 는 대통령 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 은 국무위 원이, 지명 이 없는 경 우 에 는 제26조 제1 항에 규정					-- 인구 전 략 기 획 부 장 관----

현 행	김성원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서삼석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추경호의원안
된 순서에 따른 국무 위원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 ----- ----- ----- ---
<u>제26조(행 정 각부) ①</u>	<u>제26조(행 정 각부) ①</u>	<u>제26조(행 정 각부) ①</u>	<u>제26조(행 정 각부) ①</u>	<u>제26조(행 정 각부) ①</u>	<u>제27조(행 정 각부) ①</u>
대 통 령 의	-----	-----	-----	-----	-----
통 할 하 에	-----	-----	-----	-----	-----
다음의 행	-----	-----	-----	-----	-----
정 각 부 를	-----	-----	-----	-----	-----
둔다.	--.	--.	--.	--.	--.
1. 기획재 정부	1. ~ 19. (현 행 과 같음)	1.·2. (현 행과 같 음)	1. ~ 19. (현 행 과 같음)	1.(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교육부 <u><신 설></u>	<u>20. 저출생 대 응 기 획부</u>	<u>3. 인구위 기대응부</u>	<u>20. 저출산 고 령 화 대 응 기 획부</u>	<u>2. 저출산 대 응 기 획부</u>	<u>2. 인구전 략 기 획 부</u>
<u>3. ~ 15.</u> (생 략)		<u>4. ~ 20.</u> (현행 제 3호부터 제19호까 지와 같 음)		<u>3. ~ 15.</u> (현 행 제2호부 터 제15 호 까 지 와 같 음)	<u>3. ~ 20.</u> (현 행 제2호부 터 제19 호 까 지 와 같 음)
<u>16. 여성가 족부</u>				<u><삭 제></u>	
17. ~ 19. (생 략)				17. ~ 19. (현 행 과 같음)	
② 행정각	② . ③	② . ③	②·③ (현	②·③ (현	

현 행	김성원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서삼석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추경호의원안
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기획	(현 행 과 같음)	(현 행 과 같음)	행과 같음)	행과 같음)	제27조(기 획

현 행	김성원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서삼석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재 정 부)					재 정 부)
① 기획재					① -----
정 부 장 관					-----
은 <u>중장기</u>					-- <u>중장기</u>
<u>국 가 발 전</u>					<u>국 가 발 전</u>
<u>전략수립,</u>					<u>전략수립</u>
경 제 · 재					(<u>인 구 에</u>
정 정 책 의					<u>관한 사항</u>
수 립 · 총					<u>은 제외한</u>
괄 · 조정,					<u>다</u>), ----
예 산 · 기					-----
금의 편성					-----
· 집 행 ·					-----
성 과 관 리,					-----
화 폐 · 외					-----
환 · 국 고					-----
· 정 부 회					-----
계 · 내 국					-----
세 제 · 관					-----
세 · 국 제					-----
금융, 공공					-----
기관 관리,					-----
경 제 협 력					-----
· 국 유 재					-----
산 · 민 간					-----
투자 및					-----
국 가 채 무					-----
에 관한					-----
사무를 관					-----
장한다.					-----.
② ~ ⑩					② ~ ⑩
(생 략)					(현 행 과

현 행	김성원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서삼석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제39조(보건 복 지 부) ① 보건복 지 부 장 관 은 생활보 호 · 자 활 지 원 · 사 회 보 장 · 아 동 (영 · 유 아 보 육 은 제외한 다) · <u>노인</u> · <u>장 애 인</u> · 보 건 위 생 · 의 정 (醫政) 및 약정(藥政) 에 관한 사무를 관 장한다. ② · ③ (생 략)			제39조(보건 복 지 부) ① ----- ----- ----- ----- ----- ----- ----- --- <u>장애인</u> ----- ----- ----- ----- ----- ----- --. ② · ③ (현 행 과 같음)		같음)
<u><신 설></u>	제46조(저출 생 대응 기 획부) 저 출생 대응 기 획 부 장 관은 저출 산 · 고 령 사 회 정 책	제29조(인구 위 기 대 응 부) 인구 위 기 대 응 부 장 관 은 인 구 정 책 의 수립 · 조 총 괄 · 조	제46조(저출 산 고 령 화 대 응 기 획 부) 저출 산 고 령 화 대 응 기 획 부 장 관 은 출산 및	제28조(저출 산 대 응 기 획부) 저 출산 대응 기 획 부 장 관은 저출 산 · 고 령 사 회 정 책	제29조(인구 전 략 기 획 부) ① 인 구 전 략 기 획 부 장 관 은 인구에 관한 중장 기 국가발

현 행	김성원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서삼석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제28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보육·교육,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	<u>의 수립·총괄·조정,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u>	<u>정, 인구위기 대응 전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u>	<u>노인 정책의 기획·종합, 노인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u>	<u>의 수립·총괄·조정, 인구정책의 수립·총괄,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u>	<u>전 전략 수립,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u>
					② 인구전략기획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제28조(교육부) (현행과 같음) *항 번호 삭제

현 행	김성원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서삼석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교육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2(차관보)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 1. 사회정책 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 2. 교육부 소관 디지털교육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삭 제> *인구전략기획부에 차관보 1명을 둠.
제42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삭 제>	

현 행	김성원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서삼석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추경호의원안
	부칙 제2조 (조직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등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u>보건복지부장관</u>의 소관사무 중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는 <u>저출생대응기획부장관</u>이 승계한다. ②·③ (생략)	부칙 제2조 (조직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등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u>보건복지부장관</u>의 소관사무 중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는 <u>인구위기대응부장관</u>이 승계한다. ②·③ (생략)	부칙 제2조 (조직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등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u>보건복지부장관</u>의 소관사무 중 제46조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는 <u>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장관</u>이 승계한다. ②·③ (생략)	부칙 제2조 (조직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등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u>보건복지부장관</u> 및 <u>여성가족부장관</u>의 소관사무 중 제28조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는 <u>저출산대응기획부장관</u>이 각각 승계한다. ②·③ (생략)	부칙 제2조 (조직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등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u>기획재정부장관</u> 및 <u>보건복지부장관</u>의 소관사무 중 제28조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는 <u>인구전략기획부장관</u>이 각각 승계한다. ②·③ (생략)

최근 10년 동안의 우리나라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출생아 수는 2014년 약 44만명에서 2023년 약 23만명으로 감소하였고, 사망자 수는 2014년 약 27만명에서 2023년 약 35만명으로 증가하면서, 2020년부터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를 비교한 자연증가건수가 마이너스 수치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그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최근 10년 간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 현황]

(단위: 명)

구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자연증가건수
2014	435,435	267,692	167,743
2015	438,420	275,895	162,525
2016	406,243	280,827	125,416
2017	357,771	285,534	72,237
2018	326,822	298,820	28,002
2019	302,676	295,110	7,566
2020	272,337	304,948	-32,611
2021	260,562	317,680	-57,118
2022	249,186	372,939	-123,753
2023*	230,000	352,700	-122,800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 2023년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는 잠정치

또한 여성 한 명이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¹⁾도 2014년 1.21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이며²⁾,

향후 10년 동안의 전망치를 살펴보면, 2025년까지 0.65명으로 낮아진 후에는 2033년 0.92명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전망 또한 인구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로 보는 약 2.1명³⁾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

[합계출산율 현황 및 전망(2014~2033년)]

(단위: 명)

연도	합계출산율 현황	연도	합계출산율 전망
2014	1.21	2024	0.68
2015	1.24	2025	0.65
2016	1.17	2026	0.68
2017	1.05	2027	0.71
2018	0.98	2028	0.75
2019	0.92	2029	0.78
2020	0.84	2030	0.82
2021	0.81	2031	0.85
2022	0.78	2032	0.88
2023	0.72	2033	0.92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및 장래인구추계)

1)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 TFR): 한 여자가 평생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며, 출산력 수준 비교를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 : ASFR)의 총합(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2)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의 OECD 회원국 통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에서 대한민국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는 국가들은 스페인(1.29), 이탈리아(1.30), 일본(1.32), 포르투갈(1.37), 그리스(1.38) 순임.

3) 1970년대 약 3~4명 수준이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체 수준인 2.08명으로 하락하였음. (신윤정, “출산률 회복, 50년 걸린다”, 나라경제 제20권 제10호 통권 제227호, KDI경제정보센터, 2009년, p.80.)

낮은 출산율은 기대수명⁴⁾의 연장과 함께 인구의 규모 및 구조를 변화시키게 되는데,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 중위추계시나리오⁵⁾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인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의 연령별 구조 측면에서도 0~14세 및 15~64세의 비율이 각각 감소하고, 2043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 비율이 36.0%로 2013년의 11.9%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규모 및 연령별 구조 현황과 전망(2013~2043년)]

(단위: 만명, %)

구분		2013	2018	2023	2025	2028	2033	2038	2043
총인구		5,043	5,159	5,171	5,168	5,146	5,104	5,042	4,938
인구 성장률		(0.46)	(0.43)	(0.08)	(-0.13)	(-0.15)	(-0.19)	(-0.30)	(-0.49)
인구 구조	0-14세	7,392	6,595	5,705	5,258	4,531	3,801	3,795	3,956
		(14.7)	(12.8)	(11.0)	(10.2)	(8.8)	(7.4)	(7.5)	(8.0)
	15-64세	37,014	37,624	36,572	35,912	34,804	32,979	30,130	27,632
		(73.4)	(72.9)	(70.7)	(69.5)	(67.6)	(64.6)	(59.8)	(56.0)
	65세 이상	6,023	7,366	9,436	10,513	12,125	14,260	16,492	17,792
		(11.9)	(14.3)	(18.2)	(20.3)	(23.6)	(27.9)	(32.7)	(36.0)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중위추계시나리오 기준)

*주- 2022~2072년에 대한 장래인구추계 중 2013~2043년까지의 통계자료를 5년 단위로 기재하고, 인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2025년도 함께 기재

4) 기대수명: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 2022년 기준 기대수명은 82.7년(남자 79.9년, 여자 85.6년)임(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5) 중위추계시나리오: 인구변동요인(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을 중위(중간) 수준으로 가정·조합한 기준 시나리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연령 구조 변화는 노동력의 감소, 소비의 감소, 저축과 투자의 축소, 제조업의 해외 이전 등으로 이어져 경제가 위축되고, 교육연령인구 감소, 군병력 자원 부족, 주택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 하락 등으로 교육, 국방, 주거 등의 사회적 기반이 약화되며, 노년부양비⁶⁾의 급격한 상승으로 미래세대의 조세부담 증가와 함께 사회 보장제도의 근간이 변화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의 소멸을 우려해야 하는 등 많은 사회 문제들을 야기할 것으로 보임⁷⁾.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정부조직 체계를 살펴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기관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또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면서⁸⁾ 큰 틀에서의 인구정책 컨트롤

6) 노년부양비: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이상)의 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년부양비는 25.8이며, 2030년 38.0, 2040년 59.1로 예상됨(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7) 김순은, “저출생·고령화와 행정의 역할”, 서울행정학회포럼 통권 제33호, 서울행정학회, 2018, p.10-13. 참고, 이강호, 월간 헌정 통권 451호, 대한민국의헌정회, 2020, p.40-45. 참고, “이대로면 2030 소득의 40% 세금 낸다 - 저출생·고령화에 국가재정 휘청”, 매일경제, 2024.1.31. 참고

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

타워 역할을 하고 있음⁹⁾.

[인구정책 관련 스펙트럼 및 기관별 주요 기능]

구분		주요 기능	기구
기획·조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총괄·조정 (위원장: 대통령)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보건복지부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총괄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작성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기획재정부	▶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중장기 발전전략	미래전략국 경제구조개혁국

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⑤ (생략)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제처장(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안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간사위원이 된다.

⑥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9) 고영준, “인구감소 시대,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 2024년 정치행정조사실 중점과제(단기) 보고서”, 이슈와 논점 제2226호, 국회입법조사처 참고

구분		주요 기능	기구
부문별 정책· 사업	보건복지부	▶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정책 ▶ 아동복지 정책총괄, 아동수당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 노인 보건복지정책 총괄, 노인학대예방, 노인주거복지시설, 지역사회 통합돌봄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치매 종합대책,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노인 건강관리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 보육정책 기획, 보육교사 관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부모교육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 '24.6.27. 교육부 이관
	여성가족부	▶ 여성인력 개발, 일·생활 양립정책 ▶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여성정책국
		▶ 청소년정책, 청소년단체 지원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 청소년 복지정책,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지원,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
		▶ 가족정책 기획, 가족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 한부모가족 지원, 양육비 이행제도 ▶ 아이돌봄, 가족친화 문화조성 ▶ 다문화가족 지원, 결혼중개업 관리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관
	고용부	▶ 고령화 대응 고용대책, 고령자 전직·취업지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 ▶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통합고용정책국
		▶ 청년고용정책 총괄, 대학 진로지도 사업지원 ▶ 청년 취업지원사업, 청년 자산형성 지원	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
	교육부	▶ 초등 돌봄체계 구축, 초·중등 방과후학교 지원	교육복지돌봄지원관
		▶ 유보통합('24.6.27.), 유아교육비 지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급식·안전, 유치원 평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국토부	▶ 신혼부부·고령자 주거지원	주거복지정책관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 정책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행안부	▶ 인구감소지역 대응, 생활인구 정책, 지방소멸 대응기금	균형발전지원국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 발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2005년에 제정·시행된 법률로 20년 동안 현행 체계를 통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세계 최저 수준에 해당함. 이에 대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관임에도 정책심의 권한만 있을 뿐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어 새로운 인구정책 개발이나 부처 간 정책조정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사회적 분위기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 추진 체계 전환 및 인구정책 전담 중앙행정기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바¹⁰⁾, 개정안들은 부총리급 또는 장관급의 인구정책 전담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하여, 국가 비상사태¹¹⁾로 불리는 심각한 인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동 개정안들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동 개정안들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신설하려는 조직의 명칭, 장관의 부총리 겸임 여부, 관장 사무 등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임.

먼저, 신설 조직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개정안들이 ‘저출생’,

10) 고영준, “인구감소 시대,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 2024년 정치행정조사실 중점과제(단기) 보고서”, 이슈와 논점 제2226호, 국회입법조사처, 강혜련, “저출산 문제 극복은 사회 전반의 문화와 가치를 관통해야”, 저출산 골든타임! 인구 전담장관 신설을 위한토론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제2차 정례포럼(회장: 김학용), 2016, 김영록, “인구전담당관 신설 관련 토론회”, 저출산 골든타임! 인구 전담장관 신설을 위한토론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제2차 정례포럼(회장: 김학용), 2016. 참고

11) 2024.6.1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고령화’, ‘인구’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신설 조직이 관장하게 될 사무에 대한 논의와 함께 관장 사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관장 사무와 업무 이관 기관들을 살펴보면, 개정안들은 신설 조직으로 하여금 현행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총괄 기능 및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 중 인구에 관한 사항 등 주로 정책 수립·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건복지부 관장 사무에서 ‘노인’ 관련 사무를 삭제(서삼석의원안)하거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및 가족 사무’를 이관(박성민의원안)하는 것은 일부 집행 기능 또한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신설 조직에 정책 수립·총괄·조정 기능 외에 개별 정책의 집행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신설조직의 명칭, 부총리 겸임, 관장 사무, 업무 이관 기관 등 비교]

개정안	신설조직 명칭	부총리 여부	관장 사무	업무 이관 기관
김성원 의원안	저출생 대응기획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총괄·조정 -인구구조변화 대응	보건복지부
백혜련 의원안	인구위기 대응부	부총리 (인구정책 총괄·조정)	-인구정책 수립·총괄·조정 -인구위기대응전략	보건복지부
서삼석 의원안	저출산 고령화 대응기획부		-출산 및 노인 정책의 기획·종합 -노인에 대한 보호·지원 ※보건복지부 관장사무에서 ‘노인’ 삭제	보건복지부

박성민 의원안	저출산 대응기획부	부총리 (사회·교육·문화정책 총괄·조정) ※ 교육부장관 겸임 부총리 →저출산대응기획 부장관이 겸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총괄· 조정 -인구정책의 수립·총괄 -청소년 및 가족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포함) ※여성가족부 폐지 → 청소년·가족 업무 이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폐지)
추경호 의원안	인구전략 기획부	부총리 (인구·사회·문화정책 총괄·조정) ※ 교육부장관 겸임 부총리 →인구전략기획 부장관이 겸임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기획재정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 립’ 사무에서 ‘인구에 관한 사항’ 제 외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둘째,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는 법률¹²⁾로서, 개정안들은 인구문제 전담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관장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신설하려는 기관의 역할과 인구정책 추진 체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¹³⁾”(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 있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의 개편 및 정책 범위 확대,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의 인구위기대응정책 총괄·조정 권한 명시,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저출생 관련 사업 예산 사전심의권 부여 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정부

12) 「정부조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625호,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1610호, 추경호의원 대표발의)과 내용이 연계되어 있음.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하여 동 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으며,

동 법률안의 주요 내용 중 정책 범위의 확대(인구의 국가 간 이동)와 관련하여 이민 관련 조직의 필요성 여부, 정책 심의기구(위원회) 개편과 관련하여 심의기구의 위상 변화(위원장: 대통령 → 부총리 겸임 인구전략기획부장관), 예산 사전심의권 부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될 저출생 관련 사업의 대략적인 범위 등은 우리 위원회 심사에 있어서도 주요 논의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복지위 소관)” 주요 내용¹⁴⁾]

개정안	현행		개정안
법률 제명 변경	「 <u>저출산·고령사회</u> 기본법」	⇒	「 <u>인구위기대응</u> 기본법」
정책 범위 확대	<u>저출산·고령사회</u> 정책 - <u>저출산</u> 및 <u>인구의 고령화</u> 에 따른 변화에 대응	⇒	<u>인구위기대응</u> 정책 - <u>저출생·고령화</u> 및 <u>인구의 국가 간 이동</u>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
정책 심의기구 (위원회) 개편	<u>저출산·고령사회</u> 위원회 - 대통령 소속 - 위원장: <u>대통령</u>	⇒	<u>인구위기대응</u> 위원회 - 소속 : 규정 없음 - 위원장: <u>인구전략기획부장관(부총리)</u>
정책 총괄·조정	-	⇒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의 <u>인구위기대응정책 총괄·조정</u> 권한 명시
예산 사전심의	-	⇒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u>저출생 관련 사업 예산 사전심의권</u> 부여 - 일·가정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출생 관련 사업

1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625호,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기본방향

셋째, 개정안은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인구위기 대응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인구감소

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인구위기대응정책”이라 함은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인구의 총량 및 구성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7조(인구위기대응정책의 총괄·조정) 인구위기대응정책은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한다.

제8조(인구위기대응정책 기본계획) 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인구위기대응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인구위기대응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인구위기대응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④ (생략)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①·② (생략)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안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가정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출생 관련 사업(이하 “저출생 관련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안 및 예산요구서를 조정 및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제11조에 따른 인구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인구위기대응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인구위기대응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다음 연도 인구위기대응사업의 시행계획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출생 관련 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⑤ (생략)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 저출생 관련 사업 예산 편성 시 국가 재정총량 규모 조정, 기금·회계 건전성 관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에 따른 인구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⑧ (생략)

제11조(인구위기대응위원회) ① 인구위기대응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구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변화추이 예측, 사회·경제적 영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인구위기대응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 등 인구위기대응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위기대응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구위기대응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인구위기대응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기타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⑥ (생략)

지역 관련 정책(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중 지방시대위원회¹⁵⁾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¹⁶⁾으로,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1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63조(기능)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정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추진·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7.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
8.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통합방안·조정에 관한 사항
11.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제72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1. (생략)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3.~18. (생략)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 추진 실적 및 성과 평가,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관련 정책을 총괄¹⁷⁾하고 있는데, 현행 체계를

시·도지사와의 협의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도에 속한 시·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과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
2.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
4. 국가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조달과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5.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국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국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실태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계획, 시·도기본계획,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 경제·사회·문화적 여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제30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유할 수 있다.

제31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 및 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정책 추진 점검 및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유지하면서 개정안을 의결하는 경우 인구정책이 ‘신설 기관에서 총괄하는 인구위기 대응’과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는 지역 인구감소위기 대응(지방소멸 위기 대응)’으로 이원화되는 측면이 있어 보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부칙에 신설 기관에서 총괄하는 인구위기대응기본계획과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는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¹⁸⁾하고 있으나, 인구정책의 유기적 연계 및 효과성 측면에서 인구위기 대응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하나의 부처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제9조에 따른 시·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가기본계획, 시·도기본계획,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①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구감소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625호,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부칙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④ (생략)

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구위기대응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인구위기대응정책 기본계획

⑥·⑦ (생략)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4.~7. (생략)

넷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및 가족 사무를 신설 조직에 이관하는 안(박성민의원안)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2022년 10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에 이관하면서,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여성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¹⁹⁾하여 추진한 바 있음.

개정안에서는 신설 조직에 이관하는 업무로 청소년 및 가족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현재 여성가족부의 관장 사무²⁰⁾ 중 이관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기능의 수행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²¹⁾, 또한 2022년 정부조직 개편 추진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하여 여러 찬반 의견이 제시되었고²²⁾, 국회에서는 여성가족부

19) 행정안전부, “정부조직 개편방안”, 2022.10.06.

20) 「정부조직법」 제42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398호, 박성민의원안)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은 신설하려는 저출산대응기획부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398호,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제2조(조직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8조에 규정된 사무	저출산대응기획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8조에 규정된 사무	저출산대응기획부장관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보건복지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또는 저출산대응기획부
여성가족부	저출산대응기획부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부령으로 본다.

22) 행정안전부, “정부조직 개편방안”, 2022.10.06., 국가인권위원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2022.10.14.,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에 대한 설명자료”, 2022.10.14.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2022.5.11.) 회의록,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2022.5.12.) 회의록,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2022.8.18.) 회의록

박선영·박복순·김복태·고현승·김은희(2021).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IX):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에 대한 오해, 사실을 이렇습니다”(2021.7.15.,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알림·소식-정책뉴스)

“김정선, 여가부차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수혜자 75.7%가 남성”(주간동아, 2021.8.6.)

폐지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을 의결하였는바, 당시에 제기되었던 의견들과 국회 논의과정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정부는 2024년 7월 1일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 수행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²³⁾하여, 동 개편방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경호의원 등 108명의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이에 해당함.

23)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계부처합동, 2024.7.1.

2. 국무총리 소속 정무장관 신설(추경호의원안)

개정안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무장관을 신설하려는 것임(추경호의원안 제10조 및 제20조 신설).

현행	추경호의원안
제10조(정부위원) <u>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와 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u> <u><신설></u>	제10조(정부위원) <u>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정무장관 밑의 차관-----</u> ----- -제31조제2항·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 ----- -----. 제20조(정무장관) ①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이하 “정무장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정무장관 밑에 차관 1명을 두되,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정무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정무장관은 관장 사무가 명시된 행정각부의 장관과 달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국무위원을 말하며, 연혁상으로는 정부 수립 당시 무임소 국무위원²⁴⁾이라는 명칭으로 존재하였고, 1970~1981년에는 무임소장관²⁵⁾, 1981~1998년에는 정무장관²⁶⁾으로 명칭변경이 있었으며, 1998~2008년에는 폐지된 바 있고, 2008~2013년에 특임장관²⁷⁾으로 다시 신설된 후, 2013년에 다시 폐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이하 무임소장관, 정무장관, 특임장관을 “정무장관등”이라 함)²⁸⁾.

정무장관등의 수행 사무는 「정부조직법」에서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도록 규정해 왔고, 하위 규정에서도 직제²⁹⁾ 또는 국무총리 훈령³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던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는

24) 무임소 국무위원이 규정된 법령상 근거를 찾기는 어려우며, 1970년 8월 무임소장관부터 설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보임.

25) 「정부조직법」(법률 제2210호, 1970.8.3. 일부개정·시행) 제10조의2(무임소장관) ① 원, 부, 처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이하 “無任所長官”이라 한다)은 국무회의 의장이 특히 지정하는 사항을 조사·연구 및 조정한다.

② 무임소장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두되, 그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정부조직법」(법률 제3422호, 1981.4.8. 일부개정·시행) 제18조(정무장관) ① 원·부·처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이하 “政務長官”이라 한다)은 대통령 및 그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며, 그 수는 3인이내로 한다.

② 정무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정부조직법」(법률 제3540호, 1982.3.20. 일부개정·시행) 제18조(정무장관) ① 원·부·처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이하 “政務長官”이라 한다)은 대통령 및 그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며, 그 수는 2인이내로 한다.

② 정무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27)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2.29. 전부개정·시행) 제17조(특임장관) ①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이하 “특임장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특임장관 밑에 차관 1명을 두되, 차관은 정부직으로 한다.

③ 특임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28) 권용수, “특임장관의 역할에 관한 소고”, 입법과 정책 제2권제1호, 국회입법조사처, 2010, p.119-121. 참고 “정무장관실 연혁: 1948-1997”, 정무장관(제1실), 1997, p.1-7. 참고

고홍길, “정무장관 부활 왜 필요한가”, 월간 헌정, 통권 408호, 대한민국헌정회, 2016, p.33-34. 참고

29) 「정무장관실직제」(대통령령 제14417호, 1994.11.26. 일부개정 및 시행) 제2조(정무장관의 호칭 및 사무) ① 정무장관의 호칭은 정무장관 다음에 (제1) 또는 (제2)를 붙이는 것으로 한다.

②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무중 국회·정당등 정치관련사무는 정무장관(제1)이, 여성정책관련사무는 정무장관(제2)이 각각 수행한다.

30) 「정무장관(제2)실의소관업무」(국무총리훈령 제243호, 1990.6.21. 전부개정, 1990.7.12. 시행)

정무장관등에게 특히 지정된 사무를 명시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 행정부와 정당 사이의 가교 역할이라는 정치 관련 사무를 하였고, 또한 경제·외교안보·여성 업무 등 시대상황에 따라 그 역할·기능이 다양하게 변화하였던 것으로 보임³¹⁾.

[정무장관등의 수행 업무 사례]

구분	직위	업무	비고
제1공화국	무임소 국무위원	▶ 국정심의 참여, 국정전반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조사와 시정건의(추정)	최초 임명: 2명 (그 후에는 1명)
제2공화국	무임소 국무위원		
제3공화국	무임소 국무위원	▶ 정부-여당 간 가교 역할 ▶ 국회심의 참여 ▶ 특명사항 등 처리	2명 (정무, 경제 분야)
	무임소장관		
제4공화국	무임소장관		제1무임소장관 제2무임소장관
제5공화국	정무장관	▶ 국회-정부 간 협조, 야당과의 협조 ▶ 정부-정당 간 당정협조 및 정책협의 ▶ 시민운동단체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제1정무장관(임명) 제2정무장관 ³²⁾ (미임명)

정무장관(제2)실의 소관업무를 다음과 같이 개정 시달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1. 사회·문화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여성분야에 중점을 둔다.
 2. 업무의 추진방법은 각계와의 대화, 여론수집등을 통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대책을 건의하고, 정책을 연구 개발하며, 소관부처간에 상충되는 시책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3. 각원·부·처·청은 정무장관(제2)실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며, 특히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및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미리 정무장관(제2)실과 협의한다.
- 31) 권용수, “특임장관의 역할에 관한 소고”, 입법과 정책 제2권제1호, 국회입법조사처, 2010, “정무장관실 연혁: 1948-1997”, 정무장관(제1실), 1997, 참고
- 32) 1981년 4월 법 개정을 통하여 무임소장관의 직명을 정무장관으로 개칭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여 그 수를 3인 이내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1982년 3월 서울올림픽 등 체육업무의 급증으로 체육부를 신설하고 정무장관의 수를 3인에서 2인으로 조정하였다. (중략) 인원 수를 규정하였으나 동일한 기간에 2명이 인선된 경우는 없었으며, 모두 제1정무장관으로써 중복되지 않은 기간 동안 재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직위	업무	비고
제6공화국	정무장관	-제1정무장관- ▶ 국회-정부 간 협조, 야당과의 협조 ▶ 정부-정당 간 당정협조 및 정책협의 ▶ 시민운동단체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제2정무장관- ▶ 여성·아동·청소년·노인, 문화·예술 분야 업무 → 1990.6. 이후 여성 관련 업무에 비중 ³³⁾	제1정무장관 제2정무장관
	폐 지(1998.2. ~ 2008.2.)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특임장관	▶ 국회와 정부 간의 소통채널 ▶ 핵심적인 국정사업 및 관련 대국회 업무	이명박정부
	폐 지(2013.3. ~ 현재)		박근혜정부~현재

※자료: 권용수, “특임장관의 역할에 관한 소고”, 입법과 정책 제2권제1호, 국회입법조사처, 2010,
 “정무장관실 연혁: 1948-1997”, 정무장관(제1실), 1997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권용수, “특임장관의 역할에 관한 소고”, 입법과 정책 제2권제1호, 국회입법조사처, 2010, p.130.)

82년 3월 20일에는 체육부 신설에 따라 정무장관(제2)실이 체육부로, 정무장관(제3)실이 정무장관(제2)실로 개편되었고, 83년 10월 7일부터는 정무장관(제2)실은 장관이 임명되지 아니한 기간동안 운영이 일시 중단되다가, 88년 2월 25일 조경희 첫 여성장관이 임명됨으로써 정무장관(제2)실이 출범하게 되었으며, 여성 아동청소년노인문제와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사회 문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정무장관실 연혁: 1948-1997”, 정무장관(제1실), 1997, p.2.)

「정무장관실 직제」(대통령령 제11239호, 1983.10.7. 일부개정·시행) 제5조(정무장관 제2실의 운영정지)

①정무장관(제2)실은 정무장관(제2)의 임명되지 아니한 기간중에는 그 임명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에 그 운영을 정지한다.

②·③ (생략)

33) 1990.6.21. 국무총리훈령의 개정으로 문화·예술 분야는 문화부로, 청소년 분야는 체육부로 이전되고, 제2정무장관실은 여성·아동·노인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되면서 특히 여성 관련 업무에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권용수, “특임장관의 역할에 관한 소고”, 입법과 정책 제2권제1호, 국회입법조사처, 2010, p.130.)

「정무장관(제2)실의 소관업무」(국무총리훈령 제243호, 1990.6.21. 전부개정, 1990.7.12. 시행)

정무장관(제2)실의 소관업무를 다음과 같이 개정 시달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1. 사회·문화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여성분야에 중점을 둔다.

2. 업무의 추진방법은 각계와의 대화, 여론수집등을 통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대책을 건의하고, 정책을 연구 개발하며, 소관부처간에 상충되는 시책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3. 각원·부·처·청은 정무장관(제2)실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며, 특히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및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미리 정무장관(제2)실과 협의한다.

「정무장관실직제」(대통령령 제14417호, 1994.11.26. 일부개정 및 시행) 제2조(정무장관의 호칭 및 사무) ①정무장관의 호칭은 정무장관 다음에 (제1) 또는 (제2)를 붙이는 것으로 한다.

②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무중 국회·정당등 정치관련사무는 정무장관(제1)이, 여성정책관련사무는 정무장관(제2)이 각각 수행한다.

개정안은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을 다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무장관등이 내각제적 요소를 가진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권력구조³⁴⁾에서 행정부·국회·정당·시민단체의 중간지대에서 행정부의 정치적 사안을 공식·비공식으로 협의조정할 수 있는 정치 담당 부처로서의 기능을 수행³⁵⁾하였는바, 원활한 여야관계 및 국정수행을 위해 동 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³⁶⁾이 있고, 관련 연구에서도 정부와 입법부 및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기관들 사이의 소통 통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국가 정책 수행 등을 동 제도의 순기능으로 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정무장관등은 명칭과 기능에 다소 변경을 거치면서 약 55년간 운영되었던 제도이기는 하나, 1998년과 2013년 정부조직 개편 시에는 이를 폐지하고 국무총리실 등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³⁷⁾하도록 하였던

34) 특임장관은 정부와 국회, 정부와 정당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영국과 독일의 총리실 장관, 일본의 내각관방장관과 유사한 위치로 내각책임제 하에서는 당연직이지만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보기 드문 독특한 직책이다.

(권용수, “특임장관의 역할에 관한 소고”, 입법과 정책 제2권제1호, 국회입법조사처, 2010, p.120.)

35) 고흥길, “정무장관 부활 왜 필요한가”, 월간 헌정 통권408호, 대한민국헌정회, 2016, p.33-34.,

“정무장관실 연혁: 1948-1997”, 정무장관(제1실), 1997. p.6. 참고

36) 고흥길, “정무장관 부활 왜 필요한가”, 월간 헌정 통권408호, 대한민국헌정회, 2016, p.33-34. 참고

37) 김대중정부에서는 1998년 2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제1정무장관실이 폐지되고 기능 중 일부만 국무총리 비서실로, 제2정무장관실도 폐지되면서 대통령 직속인 여성특별위원회로 그 기능이 각각 이관되었다. (중략) 이는 기존의 각 공화국별로 존재하였던 무임소 국무위원, 무임소장관, 정무장관이 수행하던 업무를 국무총리 비서실의 정무수석 및 각 분야의 수석들에게 위임하고, 또한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임무를 분산시키면서 정무장관제도를 폐지시킨 것이다.

(권용수, “특임장관의 역할에 관한 소고”, 입법과 정책 제2권제1호, 국회입법조사처, 2010, p.137.)

「국무총리비서실직제」(대통령령 제15695호, 1998.2.28. 전부개정 및 시행) 제4조(정무비서관) ①정무비서관은 관리관 또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정무비서관 밑에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인 비서관 3인을 둔다.

②정무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정당과 행정부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2. 국무총리의 대국회활동 보좌에 관한 사항

사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 제도에 대하여 정부조직 개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여부를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임.

가장 가까운 운영 사례인 특임장관(「정부조직법」 상 2008.2.~2013.3.)의 경우, 2013년 폐지 당시 특임장관의 정무 기능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분산돼 있고, 향후에는 각 부처의 장관이 정무 기능에 적극 참여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특임장관 폐지 배경을 설명하였는바³⁸⁾,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장관급 기관 신설을 통한 국회-정부 간의 소통 강화라는 현 상황에서 필요성과 함께 정무 기능을 수행하는 타 직위³⁹⁾와의 중복 여부 및

3. 고위당정관련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국무총리국정자문단의 운영 및 각종 회의(국무회의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5. 기타 다른 비서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8) “정부조직개편 5년만에 문 닫는 특임장관실”, 2013.1.15. ,SBS뉴스, “5년 만에 문 닫는 특임장관실”, 2013.1.15. JTBC뉴스, “[정부조직개편]특임장관실 폐지” 2013.1.15. 한국경제TV
 39)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4조(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① 대통령비서실에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을 둔다.
 ②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 대통령비서실 직제 [별표]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	
총계	443
정무직 계	12
대통령비서실장(장관급)	1
정책실장(장관급)	1
보좌관 또는 수석비서관(차관급)	10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계	43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79
3급 또는 4급 상당 이하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352

※ 현재 대통령비서실에는 정무수석비서관실이 설치되어 있음.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4조(하부조직) ① 국무총리비서실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며, 공보실장이 겸임한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장 밑에 **정무실장**·민정실장 및 공보실장 각 1명을 두며, 각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무총리비서실장 밑에 의전비서관 1명 및 각 실장의 소관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7명의 비서관을 두며, 각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각 실별 비서관의 배치 및 분장사무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정한다.
제2조(정무실장) ① 정무실장 밑에 정무기획비서관 및 정무협력비서관을 둔다.
 ② 정무기획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무총리의 정무활동 업무기획에 관한 사항
 2.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의 정무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 국무총리비서실의 주요업무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정무 이슈 및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요 정무 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

기능 조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정부는 2024년 7월 1일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시,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 필요, 이해관계 복잡·다변화 등으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 대처를 정무장관 신설 사유로 설명⁴⁰⁾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39

-
7. 국회연락관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무총리비서실 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결과 처리, 진정·비위사항 조사·처리
 9. 청렴·반부패정책, 공직자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업무
 10. 국무총리공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다른 비서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③ 정무협력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무총리의 정치권 소통·협력에 관한 사항
 2. 국무총리비서실과 정당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3. 국무총리의 대국회활동(대정부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관련 관계장관 간담회 등) 보좌에 관한 사항
 4. 당정협조(실무당정협의, 부처별 당정협의 이행실태 점검·관리, 정당에 대한 정책설명, 정당과의 협력 및 정책·정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국무총리비서실 국회업무(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 요구자료 등)에 관한 사항
 6. 국무조정실 정무업무(정무위원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주요 입법 추진상황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8. 주요 상임위 및 각종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정당원 등에 대한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
- 40)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계부처합동, 2024.7.1.